

경기도시공사 부천약대아이파크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07.10]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Tel : 031-378-1040)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약 희망자의 전화문의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일부 정보 제공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약과 관련된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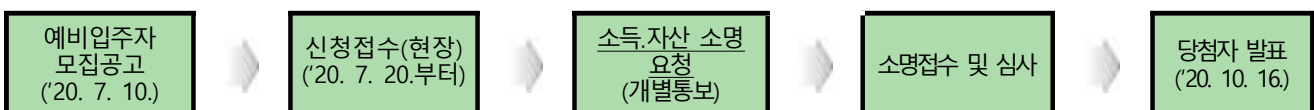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 및 제57조의3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 등 공공주택법에 위법한 행위 시 모두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07.10.(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역건, 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약대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추면 **거주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공급되어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 7. 10.)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고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접수마감 시 홈페이지 게시)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부천약대아이파크(장기전세임대)
주택관리번호	2020-000868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자는 경기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주택공급신청서 발급안내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plyhome.co.kr)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 단,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 외 가입자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은행 직접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입주자격 검증

장기전세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청약홈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각 절차별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공고문 해당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건설위치

○ 부천아이파크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79

2.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m ²)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임대조건(단위 : 천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난방	매입 호수	대기 예비자	모집 호수	계	계약금	잔금
부천약대 아이파크	59m ²	59.95	25.39	35.02	120.36	지역	150	6	60	154,350	15,430	138,920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므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
-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함.
-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함.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m²)로 표기, 면적(m²)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 상기 주택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으며, 발코니 외부샤시는 완료됨.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임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신청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해당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1)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신청 불가합니다.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신청이 가능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의 100%)	참고사항	
	1인가구	2,645,147원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가구	4,379,809원 이하		
	3인가구	5,626,897원 이하		
	4인가구	6,226,342원 이하		
	5인가구	6,938,354원 이하		
	6인가구	7,594,083원 이하		
	7인가구	8,249,812원 이하		
	8인가구	8,905,541원 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64)만원 이하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해당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가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삼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요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급(접수)일정 및 장소

■ 접수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 신청 가능여부	동점자 추첨	당첨자 발표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1순위	2020.07.20(월) (10:30~15:30)	청약저축 2년경과 24회이상 납입	인터넷 신청 불가	공사의 추첨방식 에 의함.	2020.10.16 (금) 16:00	■ 접수장소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79 아이파크1단지 관리사무소2층 ■ 당첨자 발표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분양안내→분양공고→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입주정보→예비입주자모집 →예비입주자모집안내 ■ 계약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2순위	2020.07.21(화) (10:30~15:30)	청약저축 6월경과 6회이상 납입				
3순위	2020.07.22(수) (10:30~15:30)	1,2순위 아닌자				

• 신청기간상 신청순위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횟수(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마감시간 이후 경기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전용 50㎡이상 60㎡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자가 공급신청서상 월평균소득 70%이하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 70%초과~100%이하자로 간주되니, 공급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지 및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79 부천약대아이파크1단지 관리사무소2층



▶ 대중교통 이용안내

- 11, 19, 50-1, 60 부천아이파크 정류장 하차
- 11, 19, 50-1, 60 부천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편
- ▶ 관리사무소위치 : 104동앞 커뮤니티동 2층

5. 입주자선정

■ 선정방법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851,603원 이하	2,645,147원 이하
2인	3,065,866원 이하	4,379,809원 이하
3인	3,938,828원 이하	5,626,897원 이하
4인	4,358,439원 이하	6,226,342원 이하
5인	4,856,848원 이하	6,938,354원 이하
6인	5,315,858원 이하	7,594,083원 이하
7인	5,774,868원 이하	8,249,812원 이하
8인	6,233,879원 이하	8,905,541원 이하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부천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 간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기준					비 고
전용면적50㎡~ 전용면적60㎡이하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청약통장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부천시 거주자	→ 배점이 높은자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월평균 100%이하인 세대 또한 위의 선정방법과 동일

■ 배점기준표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부천시)거주기간 (성년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6.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지정서식)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입주자모집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천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가점)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예 : 동거인)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통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수, 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1통
청약순위확인서	[접수자는 반드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plyhome)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의) 청약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20000868	1통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①~④ 무주택기간, 공급신청자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으로 확인(必서류) - (무주택기간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 혼인사)	주민센터
	⑤ 미성년자녀가 1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0. 10. 16.(금) 16: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 →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모집 → 예비입주자모집안내

• 배점 동일에 의한 추천방식 및 일시, 장소 등은 해당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드립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담당자 031-378-1040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거한 재건축소형아파트를 인수한 경기도시공사 소유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tr><tr><td>10%이하</td><td>100%</td><td>105%</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05%</td><td>110%</td></tr><tr><td>30%초과 50%이하</td><td>110%</td><td>120%</td></tr></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당첨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당첨사실은 취소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서류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세대원,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시공사 또는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031-378-1040)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타 주택 청약시 해당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환경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에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에 따른 사항들은 해당단지 관리규칙에 의하게 됩니다.

9. 지구 및 단지여건 안내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도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의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 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자산	부동산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 ☎ 031-378-1040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인 터 넷

www.gico.or.kr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안내→분양공고→기타
 www.kohom.or.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입주정보→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2020. 7. 10.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위임장

(위임인)

성명 : (인)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_____

본인은 _____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0 . 7 . .

(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첨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